제 안 요 청 서

사 업 명	「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
	제도개선 방안 연구」용역
발주기관	국 토 교 통 부

국 토 교 통 부 (도시활력지원과)

담	소 속	직 위	성 명	전화번호 (팩스번호)	전자우편
당	도시활력지원과	행정사무관	박가나	044-201-3722	parkgn@korea.kr

- 목 차 -

I. 연구용역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과업내용 및 지침 2
Ⅲ.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1
IV. 제안서 평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. 계약상대자 선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※ 제안서 관련 서식 18

- 1. 과업명 : 「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」
- 2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- □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기준 필요
 - 그간 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필수기반시설 이라고 판단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 신설과 삭제를 반복
 -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
 - 기술혁신 등 사회·경제적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져 도시기반시설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의 기준과 가치도 함께 변화할 전망
 - □ 도시계획시설(편익시설 포함)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□ 기준 하에 새로운 시설 도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필요
- □ 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활용 가이드라인(매뉴얼) 마련
 -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(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구역 도입 등) 추진 중
 - 도시계획시설은 입지조건이 우수함에도 용도제한 등으로 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으므로, **입체·복합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 추진**
 - ⇒ 실제 도시계획시설 **입체·복합화 작동을 위한 상세지침 마련 필요**
- □ 광역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 검토
 - 인구감소, 지방소멸 이슈, 지자체 간 상생, 메가시티 등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여전히 갈등도 존재

- 도시계획시설도 공공시설인 만큼 지자체 경계의 구분에서 벗어나
 광역 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존재
- ⇒ 광역시설(도시계획시설)의 설치·운영사례를 조사하고, 시대 여건 변화에 맞춰 광역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(가이드라인 등) 발굴
- 3. 용역비 : 90백만원(부가세 포함)
- 4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7개월
- 5. 계약방법 : 경쟁입찰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)
- □ 기술능력*(80%)과 입찰가격(20%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계약이행 전문성・기술성이 있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
 - *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, 가격평가 실시

Ⅱ 과업내용 및 지침

- 1. 주요 과업내용
- □ 도시계획시설 체계 재정립
 - 46종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행하고,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·관리할 대상시설의 조정 방안 제시
 - 특정 시설* 등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(공공성 등)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도시계획시설 기준(개념적 정의) 제시
 - 도시계획시설로 결정·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수가 저조한 시설 등 **신설·삭제 필요에 대한 조사**
 -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(임의시설) 확대,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^{*}의 세부 분류항목 조정 방안 검토

- 도시계획시설별, 지역별, 상황별 특성에 맞춰 필요한 편익시설을
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시설종류별로 **동일한 편익시설을 허용**하는 방식을 벗어나 **이용객의** 특성에 맞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판단 기준 제시

□ 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활용 가이드라인(메뉴얼) 마련

- 기존 입체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실태를 조사하여 **입체·복합 권장** 조합(유형)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조합 제시
- 입체·복합화 추진여부 판단 단계부터 복합할 비도시계획시설(용도)의 선정 등 실제 사업추진 全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제시
- 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 결정 및 사업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(매뉴얼) 마련

□ 광역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 검토

- 설치·운영하고 있는 **광역시설**(도시계획시설 등) 대상으로 시설 운영· 이용 지침, 지자체간 협약내용 등 **사례조사**
- 광역시설 결정 요건(인구, 지자체 간 협약 등) 및 설치기준 등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

2. 일반과업지침

1)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(과업수행계획서)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.

- 2)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, 성과품을 제출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,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.
- 6) 본 과업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7)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- 8)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세부과업지침

- 1) 용어의 해석
- o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)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,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3)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-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4) 자문회의

- o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,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보완할 수 있다.
- o 자문회의 개최시기(일정) 및 자문사항 등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.

5) 성과품 소유

- ㅇ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- ㅇ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

소유하되,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, 배포, 개작, 전송 등의 사용, 수익을 할 수 있다.

6)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

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7)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

-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8)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 -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-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

9) 특허권의 사용

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10) 기타사항

-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·반영한다.
-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
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
 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.

4.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

가. 일반사항

- o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,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.
- 할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.
-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.

나.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

- ㅇ 보고서 작성 및 인쇄
-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.
- 성과품의 규격, 편집,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.

- 표지, 양식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0 제출 성과품

구 분	제 출 시 기	제 출 수 량	비고
최종보고서	준공시	20부, CD 1식	과업의 최종결과

※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

※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. 보안대책

- 1)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「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」 (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, '17.7.13)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,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3)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 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
- 6)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7)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- 8)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9)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,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·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10)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 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 근거, 참여자, 발간 일자 등) 하여야 한다.
- 11)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·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12)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」, 「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」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6. 과업 추진 쳬계

□ 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

도시활력지원과(사업총괄)

- ▶ 사업기획, 실행총괄
- ▶ 용역 관리 및 운영 검수
- ▶ 예산집행

 \Leftrightarrow

운용대행사(사업자)

- ▶ 연구 용역 수행
- ▶ 용역 내용 관련 결과물 분석
- ▶ 용역 내용 산출물 결과 보고

※ 도시활력지원과(사업총괄)와 운용대행사(사업자)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 필수

□ 추진 일정

기간(월) 세부내용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7개월
도시계획시설 체계 재정립							
도시계획시설 입체·복합활용 가이드라인 마련							
광역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 검토							
주요 보고일정	착수 보고			중간 보고			최종 보고

1. 제안서 제출

- □ 제출기간/장소 : 입찰공고문에 따름
- □ 제출방법 : 나라장터 전자제출(e-발주시스템)
- □ **입찰 참가자격**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 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 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 - 다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(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)를 소지한 자
 - *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
 - ※ 공동수급체(공동이행방식)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공동계약 운용요령)에 따라야 함
 - 라. 업종 : 학술연구(1169)

2.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

작 성 항 목	작성내용
I. 제안개요	제안요청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
Ⅱ. 제안업체 일반	
1. 일반현황	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,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
2. 주요사업내용	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(개인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력 사항)
3. 주요사업실적	ㅇ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
Ⅲ. 제안 내용	
1. 연구 개요	o 제안의 목표, 범위, 전제조건,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하여 기술
2. 연구방향 및 내용	ㅇ 연구의 방향과 연구 내용을 기술
3. 과제수행인력 및 업무분장	ㅇ 참여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
4. 용역기간(추진일정)	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(착수보고, 수시보고, 검토회의 등)
5. 기타 관리방안	o 품질관리, 위험관리, 보고 및 검토계획,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
IV. 기타	
1.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·지원	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제시 연구수행 범위 설정 연구수행 방법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
2. 추가제안 부분	o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, 수정이 필요한 사항

3. 제안서 작성지침

가. 일반사항

○ "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"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

-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
- 할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
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
 효력을 가짐
-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
- o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

나.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

-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
- 이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

1.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

평가요소		평가요소(기준)	배점	평가방법
	기관 평가	o 기관 예산규모(정부 출연금 포함)	5	계량
제안기관	(10)	ㅇ 관련 연구 인력(석, 박사 등) 보유수	5	u
일반현황 (20)	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(10)	O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(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)	10	"
	제안 개요	연구용역의 목표, 범위, 전제조건,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이해정도	5	비계량
	연구의 방향 및 내용	연구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연구 내용의 적합성적용 논리의 적정성	20	u
	연구인력 및 업무분장	O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O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	5	и
과업수행	연구 기간	O 연구용역 추진일정·방법의 적절성 O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0	ш
부분(80)	기타 관리방안	보고 및 검토계획, 보안대책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(위험관리, 자원관리, 진도관리, 보안관리,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)	10	"
	기술 · 지식 능력	 ○ 연구용역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, 정교성 -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-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-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	20	u
	추가제안 부문	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추가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	10	u
	계		100	

- ※ 기술능력(80%) 및 가격(20%)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
 - i)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**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**
 - ii)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**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**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

<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>

- 기관 예산규모(5점)

구 분	20억원 초과	10억원 이상	10억원 미만
점 수	5	4	3

- *기관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기준
- 관련연구인력(석,박사 등) 보유수(5점)

구 분	5인 이상	3~4인	2인 이하
점 수	5	4	3

- * 증빙서류 제출
-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(10점)

구 분	0호	1회	2회	3회 이상
점 수	10	9	8	7

2. 가격 평가기준

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

계약상대자 선정

1. 선정방식 및 기준

□ 선정방식

-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에 따름

□ 선정기준

- ㅇ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- 종합평가점수 = 기술능력평가점수(80%) + 가격평가점수(20%)
 - *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

2. 제안서 평가

□ 기술능력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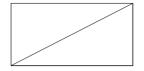
이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□ 가격평가

-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에 따라 평가
-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

3.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- □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%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
 - o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(기술능력평가+가격평가)한 결과,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
 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

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: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

기관(업체)명: (인)

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1. 회사(기관)명		2. 대표자	
3. 용역등록 분야			
4. 주 소			
5. 대표 전화번호			
6. 설립연도		년 월 일	
7. 주요연혁			
	2020년	2021년	2022년
8. 예산규모			
9. 상시 종업원수			
10.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			

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 위	주요경력(관련분야)	학위 또는 자격사항

주)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.

용역(연구) 수행실적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건명	개요	용역금액	발주처	계약일	착수일	준공일	비고

- 주) 1.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연구보고 서, 조사실적만 인정(학위논문 불인정)
 - 2.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인정(비고에 주계약자 기재)
 - 3. 공동도급의 경우.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을 기재(조사업무는 표본수 기재)
 - 4. 계약서,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

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 (관련 분야)	학위 및 자격사항
책 임 연구원					
공 동 연구원					
연 구 보조원					
보조원					

- 주) 1.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.
 - 2.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.
 - 3.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
 - ※ 필수제출서류 :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,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 는 증명서

연구진 이력사항

성	명		소 속		직 책		연 령	세
-	력			전공		야 경력	년	월
7	본용 학여 (·역 임무			학위 자격	또는 사항		
				주 요	경 력			
용역명 (논문명)				기간 `년월)	담당업무	발주처	비고	

- 주) 1.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
 - 2.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(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)

보안서약서

1. 서약자					
· 회사명 : · 소재지 : · 직책(직위) : · 성명 :					
2. 내용					
本人(本社)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『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』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.					
○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 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·공개 또는 무단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.					
○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					
2023년 월 일					
위 서약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					
확인자 : 대표이사 : (서명 또는 인)					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